# 교수업적평가위원회규정 3-1-18

규정번호 3-1-18
제정일자 2011.9.19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5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5조에 의거 우리대학 전임교원(총장은 제외한다.)의 교수업적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수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업적평가자료 확인 및 심사에 관한 사항
2. 교수업적평가 인정범위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과 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필요시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5조(회의소집 등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업무부서 팀장을 간사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12.6.4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6> <생략>

<7> 교수업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② 중 “과반수 이상”을 각각 “과반수”로 한다.

<8> - <13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2항·제3항)